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호 의원 발의)

| | |
|----------|------|
| 의안 번호 | 1389 |
|----------|------|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1일

발 의 자 : 김태호 의원(1명)

찬 성 자 : 봉양순, 추승우, 채유미, 이은주,
경만선, 정진철, 정재웅, 홍성룡,
김상훈 의원(9명)

1. 제안이유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교통약자가 특수교통수단 외의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시 택시 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16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17부터 제27조까지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제15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이용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 지원 수단 중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아니한 차량의 운행 방법 등은 제11조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정안 |
|--------------------------------|--|
| <p><신 설></p> | <p><u>제16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①</u>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제15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이용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u>②</u>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 지원 수단 중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아니한 차량의 운행 방법 등은 제11조를 따른다.</p> |
| <p><u>제16조 ~ 제26조</u> (생략)</p> | <p><u>제17조 ~ 제27조</u> (현행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와 같음)</p> |